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0년 2월호

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나. 상법 시행령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
- 나.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
- 나. 이사회 운영규정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

1. 법률

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나. 상법 시행령

1. 법률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0/1/29 개정 · 2020/2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증권의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대상 확대(제119조 제1항 제37호 및 제38호)
 - 증권의 발행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대상의 설립 근거 법률에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 및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추가
-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(제15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154조 제1항 제4호 삭제)
 - 주식 등의 보유 목적으로서 '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'의 의미 명확화
 - 위법행위 유지(留止)청구권 등 「상법」에 따라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'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'에서 제외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[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]

- ▷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의 공시를 통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
- ▷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% 이상 대량보유 하게 되거나 1%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공시하여야 함 (자본시장법 제147조)
- ▷ 단,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'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'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 가능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)
- ▷ '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'이 아닌 경우
 - ① 회사·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의 행사
 - ②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경우
 - ③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
 - ④ 단순한 의견 전달 및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

□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투자 목적에 따른 보고의무 차등화(제154조 제3항)

-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자 및 그 밖의 목적인 경우(일반투자)로 구분하여 보고내용과 보고시기를 달리 규정
 - (단순투자) 의결권, 신주인수권 등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공시의무만 부여
 - (일반투자) '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'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로 단순투자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

□ 일부 전문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따른 보고의무 차등화(제154조 제5항 신설)

-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 그 투자 목적을 구분하여 보고내용과 보고시기를 달리 규정
 -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
 -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
 -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로 구분

나. 상법 시행령 (2020/1/29 개정 ·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-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를 전자투표로 하는 경우 전자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,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립을 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(제13조 제1항, 제13조 제3항 삭제, 제13조제6항 신설)

-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수단 확대
 - (기존) 공인전자서명만 인정 → (개정) 공인인증기관 또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
 -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기관이란, 전자서명법 제4조 제1항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공인인증업무 또는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자 또는 기관을 말함(예를 들어, 한국정보인증(주), (주)코스콤, (주)케이티, (주)엘지유플러스 등)
- 전자투표 변경 · 철회 금지 조항을 삭제
 - 전자투표 기간 중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함
- 전자투표 기간 중 주주에게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와 이용편의성을 제고

□ 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공시 강화(제31조 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)

- 상장회사가 이사 ·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· 공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해당 이사 · 감사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
 -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
 -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파산 · 회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
 -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 · 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

□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(제31조 제4항 제4호 신설)

-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여 주주가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

1) 제31조 제4항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

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(제34조 제5항 제1호, 제34조 제5항 제7호 신설)

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대

- (기존)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상무(常務)에 종사하는 이사·집행임원·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
- (개정) 최근 3년 이내로 확대

—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,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 가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
 나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(2020/1/16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위반 및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함
 -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없이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의 기준을 준용

2) 주요 내용

-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(별표 제2호의2)
 -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· 조치 대상이며, 금융회사 외 일반 기업 등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
 - 이에 검사 · 제재 규정 준용 시 일부 한계가 있어, 규제 위반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
-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(별표 제2호의2 제3호 나목 (1))
 -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비율을 상향

과태료 부과비율 기준

동기 \ 결과	상	중	하
중대	기준금액의 100%	기준금액의 90%	기분금액의 75%
보통	기준금액의 90%	기분금액의 75%	기준금액의 50%
경미	기분금액의 75%	기준금액의 50%	기준금액의 25%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[과태료 산정방식]

▷ 기준금액: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 금액을 말함

* 예를 들어,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(자본시장법 제 449조). 여기에서 기준금액은 1억원

▷ 위반행위의 동기

- 상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
- 중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·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하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. 다만,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

▷ 위법행위의 결과

- 중대: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(호가의 형성 포함),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
- 보통: 기타 '중대', '경미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경미: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격 형성(호가의 형성 포함) 및 거래량 등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. 다만, 위반행위가 호가 규제 위반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

□ 동일 규제 위반에 따른 가중사유를 합리화(별표 제2호의2 제4호 가목 (1))

- 소액공모의 경우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
 - (기존) 5년 → (개정) 1년

□ 가중사유(별표 제2호의2 제4호 가목 (2))

-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로,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%까지 가중하여 제재

□ 감경사유(별표 제2호의2 제4호 나목 (1), (2))

- 소액공모 공시위반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
 -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%까지 감경
 - 소액공모 관련 규제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감독기관 인지 전에 자진시정·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최대 50%까지 확대

위반 유형	감경 사유
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②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 ③ 청약증거금 관리	실제 모집 · 매출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
④ 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 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서류 제출	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,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

□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등(별표 제2호의2 제5호 나목)

—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 · 주의조치로 같음

나.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(2020/1/29 개정 · 시행)¹⁾

1) 개정 이유

□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충실히 운영하고,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(제3-10조 제3항 및 제5항, 제3-14조)

—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정에 따라 주식 등의 보유목적별 공시내용 변동사항 세부내용을 하위 규정에 반영
 •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: ‘경영권 영향 목적’이 없더라도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‘일반투자’로 분류하고 ‘단순투자’보다 강한 공시의무 부과

□ 임원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(제3-15조 제3항 제3호~제5호)

— 임원(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, 감사)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①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 기술을 의무화하고, ②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하여 독립성 ·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과 ③ 이사회 추천 사유 등을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
 — 임원 선임 시 제공되는 참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· 서명을 첨부

1) 제3-10조 제3항 및 제5항, 제3-14조, 제3-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, 제4호, 제5호 가목, 제9호, 제10호의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

□ 임원의 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(제3-15조 제3항 제9호 및 제10호)

- 임원 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당기 임원(이사, 감사) 전원에게 대한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, 전기 임원(이사, 감사) 전원에게 대하여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및 최고 한도액 정보 제공

□ 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자 현황 공시(제4-3조 제1항 제3호 파목)

-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고자 파견근로자 등의 근로자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함
- 기업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한정하고, 분·반기보고서 공시 의무는 면제

□ 주요 회계사항 공시책임 강화(제4-3조 제1항 제3호 하목)

-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함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코스닥시장위원회 운영규정 (2020/1/21 개정 · 2020/2/1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원 등 신규업무 및 공시제도 관련 업무분장 조정사항을 코스닥시장본부 업무분장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관리부 공시제도팀을 공시부로 이관(제12조의5, 제12조의6, 별표 1)
 - 공시제도와 공시실무 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연계성 및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 서비스 강화
- 상장관리부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지원 업무 신설(별표 1)
 - 소송리스크 검토, 국내·외 상장폐지 제도 조사 및 연구 등 실질 심사 지원업무 추가

나. 이사회 운영규정 (2020/1/21 개정 · 2020/1/2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거래정보저장소(trade repository, TR) 운영 개시(2020년 10월 예정)에 따라 관련 업무규정의 제·개정 및 이용료 결정을 이사회 권한으로 정하기 위함

[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(TR) 도입]

- ▷ 거래정보저장소(TR)는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·보관 및 관리
- ▷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2009년 G20회의 합의의 일환으로 TR도입을 추진 하면서 2015년 8월 한국거래소를 TR사업자로 선정
- ▷ 2019년 1월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을 통해 TR의 설치 근거를 마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부의사항 추가(제9조 제1항 제8호 라목)

- 거래정보 보고기관 등이 납부하는 TR 이용료에 관한 결정을 이사회 부의사항에 포함
 -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이용료의 징수방법,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 및 징수시기의 결정

□ 시장위원회의 권한 추가(제19조 제3항 제1호)

- 파생상품시장위원회의 권한에 거래정보저장 업무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의 결의를 추가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4. 금융투자협회*

가.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(2020/1/16 제정 · 시행)

1) 제정 이유

- 금융투자회사가 시행 중인 해피콜 제도(상품판매 후 모니터링) 운영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
 - 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후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나 명확한 제도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
 - 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 · 운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적용 대상(제1장 제3호)
 - (대상고객)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
 - 다만, 가입상품이 동 상품 가입일 기준 1년 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 상품군에 해당되고 위험등급이 그 이하인 경우는 제외
 - (대상상품) 금융투자상품 매매, 투자일임/신탁/투자자문 계약
 - 중위험 이상(5등급 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 적용시 3등급 이상) 상품/계약
 - 투자일임 및 신탁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
 - (적용 제외)
 -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(코넥스 시장, K-OTC 시장 등)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
 -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
 - 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(배우자, 미성년 자녀)이 가입한 경우
 - (고령투자자 등에 대한 적용방법)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재산상황 · 투자경험 · 위험선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험등급 및 가입경험과 상관없이 전수(全數) 실시
 - 다만,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또는 거래소 상장 상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해피콜 업무 프로세스(제2장 1호~6호)

- (시행시기)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 해피콜 실시
- (사전문자 알림 서비스)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전 24시간 내에 사전 안내문자 발송
- (해피콜 수단)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(유선 또는 온라인)에 따라 연락
 -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 또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해피콜 실시
 - 1일 2회, 3영업일간 유선전화 미수신 시 → 온라인 해피콜 시도(1일간)
 - 3영업일간 온라인 해피콜 미응답 시 → 유선전화 해피콜 시도(1일2회)

□ 해피콜 거부 투자자 처리(제2장 7호)

- 투자자가 해피콜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'해피콜 거부 시 처리기준'에 따라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
 - 소비자에게 해피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충분히 통지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녹취 또는 서면 등으로 확인받아 보관
 - 예를 들어, 해피콜을 거부할 경우 상품 계약 이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방법이 제한될 수 있음

□ 해피콜 질문내용(제3장)

- 투자위험 등에 대해 폐쇄형(예 또는 아니오형 질문)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별로 개방형(단답형 또는 선택형) 질문으로 확장하여 질의 가능
-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